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1. 10. 29

발행인 | 박혜경

홈페이지 | www.cbwf.re.kr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안수연 | 충북여성재단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목차

1.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현황

- 가. 추진경과 및 운영체계
- 나.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내용
- 다. 작성 지원체계
- 라.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운영상 문제점

2.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개편 방안

- 가. 현행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
- 나.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개편 방안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한 자원의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 차년도 성인지예산서가, 매년 2월에는 전년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되어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있음.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의하여 협의체 구성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평등한 지방재정예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편 방안을 모색함.

-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및 현행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함. 제도 개편 방향으로 ① 성인지 예·결산서류 작성 및 운영방식 개선 ② 법적 기반 보강 ③ 지방의회의 제도 관심도 및 심사 강화 지원 등을 제안함.

1.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현황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기획재정부 외, 2020:6).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성인지예산서를 차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대상 세부사업별 성별 수혜(격차)분석, 성평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 시·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가. 추진경과 및 운영체제

- 충청북도와 같은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성인지예산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일부 수정되어 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음(박수범 외, 2019).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2013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시작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었음.
-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는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예산)·회계과(결산) 전담, 여성가족정책관 협조로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소관 지역 성 주류화 제도 자문기관인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을 지원함.

충청북도 성인지예·결산서 추진체계



출처: 정유리 외, 「2021 충청북도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2021.

- 충청북도는 성인지예산제 운영 실효성을 향상하고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9년「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당 조례 제 7조·제13조에 따라「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협의체는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자문기구이며,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등 당연직 및 성인지예산제도 전문가인 위촉직 등 15명으로 구성함.
- 충청북도는 동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중점적으로 성과 및 작성내용을 관리하는 사업인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음. 2021년 10월 현재 충청북도의 성인지예산 중점관리 사업은 30건이며, 해당 사업의 사업별 주기적 성과 모니터링 및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차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의무 반영하여 사업 효과성을 추적·관리하고 있음.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4조, 제7조)

제4조(중점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② 도지사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협의체 설치)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를 둔다.

제13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년도 충청북도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목록(30건)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21년 목표치
1	공보관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젠더전문가를 통한 홍보 게시물 평가 실시	2회
2	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확대	56명
3	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확대	34명
4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 활성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14개
5	여성가족정책관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직접)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성교육 질 향상	2회
6	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우선순위선정사업 중 성인지예산사업 증가	5%
7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희망취업지원	수강생 성별 구성비 차이	5%p
8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참여자 연간 성별분리통계 생산	1식
9	사회재난과	안전관리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	홍보물 등 계획단계 성별영향평가 분석 실시	100%
10	민간협력공동체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여성비율 제고	50%
11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여성참여 확대	60%
1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원	복지일자리 여성장애인 비율 확대	53%
13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여성 비율 확대	70%
14	경제기업과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	여성 창업 지원 강화	25%
15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여성 취업연계율	49%
16	신성장동력과	충북과학기술포럼 구성 · 운영	포럼 구성원의 여성인원 확대	9.0%
17	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교육대상자 여성비율 증가	18%
18	농업정책과	귀농귀촌인 원주민 융화교육 지원	융화교육 참여 여성귀농인 수 증가	685명
19	유기농산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여성농업인수 대비 농기계임대 여성 농업인수	2,240명
20	농식품유통과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사업	상생 협의회 여성 위원 증가	30%
21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시군)	여성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18명
22	건축문화과	농촌 행복센터 조성	성별분리 사업계획서 작성 건수	6개소
23	바이오산업과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분야 여성종사자 참여 확대	50%
24	환경정책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지원	여성대표성 제고	33%
25	대응예방과	도민안전체험관 운영	성인지적 안전교육 환경 조성	5개
26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직접)	청년창업농 중 컨설팅 사업대상 여성 선정비율 증가	20%
27	농업기술원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산업화 촉진	성인지적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산업화 촉진 사업 여성 수혜율 확대	29%
28	농업기술원	정예 전문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전문 과정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50%
29	농산사업소	양잠교육홍보	여성농업인 양잠교육 참여율 확대	32%
30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1회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나.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내용

-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은 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② 성별영향평가사업 ③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됨. 2021년 현재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5년마다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충청북도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충청북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예산사업을 차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그 외에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예산 분석이 가능한 대상사업을 자치단체 특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함.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표기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자료 : 행정안전부(2021),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단위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내역사업의 경우 내용으로 작성은 가능하나 예산은 세부사업 전체를 작성하도록 권고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사업수와 예산액의 불일치 문제, 세부사업에서 포함하는 여러개 내역사업에 대한 담당자가 다른 혼란의 문제 등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내역사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함(박수범 외, 2019).
- 성인지예산서에는 지방재정의 성평등 재정 운용을 위해 충청북도 성평등 목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를 제시하고 있음. 세부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성인지예 · 결산서 작성내용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작성 부서	작성항목	작성항목	작성 부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I. 성평등 목표	I. 성평등 목표	자치단체 결산부서
	II.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II.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분야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III.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분야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국	IV.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IV. 실·국별 성인지결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국
실·과	V.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V. 부서별 성인지결산서 1. 사업 총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집행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집행실적 ● 성과목표 달성현황 ● 성평등 효과분석 ● 자체평가 	실·과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다. 작성 지원체계

-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제도 지역 전문 자문기관인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이현주 외, 2020:19). 2020년에는 충청북도청 성인지예산서 134건·결산서 115건에 대한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이 이루어졌음.

-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제도 운영까지 관할하여 지원하므로,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컨설팅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음. 내실 있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컨설팅 지원예산 등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충청북도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과제수(2016-2020)

단위: 건

구분	컨설팅 과제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충청북도청	102	104	114	146	97	71	126	88	134	115
청주시	112	140	230	148	129	83	90	100	87	100
충주시	85	0	105	0	100	0	80	0	80	0
제천시	63	0	0	0	0	0	54	0	62	0
보은군	50	0	72	0	60	0	55	0	45	0
옥천군	106	0	106	0	80	0	75	0	65	0
영동군	71	0	68	0	41	0	43	0	37	0
증평군	63	0	58	0	55	0	36	0	30	0
진천군	74	0	71	0	72	0	65	0	57	0
괴산군	75	0	67	0	69	0	56	0	45	0
음성군	48	0	69	0	61	0	64	0	50	0
단양군	63	0	0	0	28	0	48	0	38	0
충청북도교육청	24	26	82	24	31	25	10	26	28	31
합계	936	270	1,042	318	823	179	802	214	758	246

자료: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자료(2020.12.31. 기준)

라.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운영 상 문제점

1) 성인지예산서에 한정되는 성평등 목표 수립



- 충청북도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는 매년 상위목표 3건, 상위목표에 따른 하위목표 각 2건이 수립되었고, 2015년 수립 후 2016년, 2020년 변경되었음(정유리 외, 2021). 충청북도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는 넓은 범위의 성평등 목표 수립보다는 예산부서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맞추어 단독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에만 적용되는 성평등 목표가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성평등 목표 수립이 필요함.

2)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별 부적절 작성



-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2019~2021년 충청북도 지역의 성인지예·결산서를 내용분석한 정유리 외(2021)의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가 성별 수혜분석에서는 성별통계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처를 미흡하게 작성, 성인지결산서와 수치 미연계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성과목표(지표) 설정 등에서 성별 특성 반영이 미흡한 것 등으로 분석됨. 이처럼 성인지예산서는 작성 지표가 다양하고 사업별 성인지예산서인 '사업별 설명자료'의 경우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작성 권한이 일임되므로 다소 부적절하게 작성될 소지가 있음.

3) 성인지예산 컨설팅 환류 점검 부족



-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인지예산서의 질적 향상 및 작성 지원을 위해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젠더전문가(컨설턴트)의 작성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시간적 한계 및 작성 공무원의 성실도 차이 등으로 인해 컨설팅 의견 반영률이 낮게 나타남. 2021년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결과, 성별격차 원인분석 컨설팅 의견(개선의견) 반영률이 51.3%로 나타남(정유리 외, 2021)¹⁾.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별 성평등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 개별 지표에 대한 일관성 있고 적절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컨설팅 환류 점검을 통해 성인지예산서의 질적인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중점관리 사업 성과관리 미흡



- 충청북도는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일부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 달성도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충청북도 예산부서의 추진실적 취합 외에는 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성과목표 달성률이 50%대에 머무르고 있음(정유리 외, 2021).
-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평등 관점 예산분석이 강화되어야 함. 성과관리 취합 뿐 아니라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점검 및 분석 등 추가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1) 2021년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결과, 성별격차 원인분석 컨설팅 의견(개선의견) 반영률이 51.3%로 나타남(정유리 외, 2021).

2. 제도 개편 방안

가. 현행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

-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 예산서'라는 명칭으로 인해 성평등예산 요구 총액 개념으로 혼용되고,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평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요구의 목록으로 오해를 받음. 하지만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상 성인지 예산의 개념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의되는 예산요구서가 아닌 예산분석서임. 현행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한 예산 분배라는 제도의 소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

1) 대상사업 선정 및 제외 과정의 문제점



- 성인지에·결산서 작성 사업 선정 시, 별도의 대상사업 선정 관련 자문 등 관련 지원이 없을 경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함. 이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상의 성평등 추진 과제와 무관한 사업 및 성평등 목표 달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이 선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상사업 선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차별성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성차별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성별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임(박수범 외, 2019).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은 여러 회계연도 간 연속적으로 작성되어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달성여부를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연계 사업의 경우 시간이 지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사업담당자 및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성과관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함²⁾.

2) 성인지에·결산서 작성상의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에·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의 개요는 사업대상자·수혜자,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성과목표로 이루어져 있음. 해당 서류 상 개요로 예산의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이 세부사업별 담당 공무원에게 작성이 일임되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작성 의지 및 개인별 작성 능력에 예·결산서의 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사실상 성인지에·결산서는 예산과 결산의 목록보다는 예산 및 예산의 사용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는 서류에 가까우므로 질 높은 분석내용과 성평등 함의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행정부담 및 기피서류로 인식되어 이에 못미치는 질 낮은 서류가 될 확률이 높음.

3) 성평등 효과 분석의 기능 미흡 문제점



- 현행 성인지예산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의 기능이 미흡하여 성인지예산 제도가 실제 국가재정과 예산 편성·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존재함(조선주 외, 2020)

2)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연속해서 3년 이상 실시한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함(「2021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나.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개편 방향

- 상술한 문제점에 따라 국가 성인지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으로 개편이 제안되고 있음.
- ① 성인지예산 개념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분석보고서(정부 예산이 성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성불평등한 구조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로 재정립하여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과 예산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설계, ②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평가의 질 제고 및 강화를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조선주 외, 2020). 해당 기본 개편방향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적용하고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현황 및 문제점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예·결산서류 작성 및 운영방식 개선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정의한 제도 시행 법적 기반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의하고 있음(조선주 외, 2020). 그러나 현재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예산 총괄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등의 내용에서 분석 보고서의 성격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부속서류로만 여겨짐. 또한 '예산서'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산서의 총괄표에 발표된 성인지예산 총액이 성인지정책에 편성되는 총 예산금액인 것처럼 오해를 사기도 함. 이에 따라 성인지예산서의 본래 기능인 성평등 관점에서의 예산분석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결산서류 작성 및 운영방식 개선을 제안함.

대상사업 심층 선정, 성평등 목표별 사업 유형화 분석 및 특정분야 사업 성평등 관점 분석 강화

- 성인지예산제 대상사업 선정 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성평등 관점에서 설정된 충청북도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선정함. 선정된 대상사업을 성평등 목표별로 유형화하고 해당 성평등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제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성인지예산 작성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업은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야 하므로 5회계연도 정도 연속하여 작성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함. 또한, 대상사업 중 성평등 관점에서의 연구 및 분석내용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분야를 발굴하여 심층적으로 예산분석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사업 성인지예·결산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함. 심층분석 대상 특정분야 사업 선정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을 활용하도록 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인지예산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성평등 예산배분을 위해 매년 작성되는 예산서의 부속서류뿐 아니라 5년마다 작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³⁾에 성인지예산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충청북도 성평등 목표 및 성평등한 예산분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목표로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관리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3)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된 장기적 성평등 예산분배 및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의 성평등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예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지예산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그 성과를 제고·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전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연도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총괄자료 제작 및 시스템 개편 등 전반적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기반 보강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

-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조항에서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서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규모·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성인지예산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에서는 제17조, 제18조에서 지방회계처리 결산 시 첨부서류로 성인지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서 성인지결산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을 개요·집행실적·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성평등 재정분석 목적 달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적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작성내용을 추가하는 등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개정이 필요함.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①지방자치단체별 특화 성평등 목표, ②특정분야 성평등 예산 분석 등이 있음. 또한, 상술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성인지적 지방재정계획과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 충청북도의 자치법규인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 4조(중점관리 사업)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예산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의회의 제도 관심도 및 심사 강화 지원

- 현행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는 예·결산 심의 시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되어 다음해 예산과 직전년도 결산이 성평등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세출예산서의 여러 부속서류 중 하나로 제출되다 보니 주요 서류보다는 의회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 심사 실효성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됨. 지방의회의 성인지예산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칭)충청북도의회 성인지예산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성인지예산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음. 또한 의회 예·결산 심의 시 「(가칭)성인지예·결산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인지예·결산서류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인지예산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박수범 · 김영숙 · 장윤선 · 김병권(2019).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 · 결산제도 분석 · 평가사업(V) :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현주 · 이지영 · 안수연(2020). 「2020년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정유리 · 김가빈 · 김선미 · 안수연(2021). 「2021 충북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충청북도.
- 조선주 · 김영숙 · 박수범 · 김효주 · 성민정 · 권도연 · 김병권 · 김해람 · 안주희 · 김수지(2020).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 김효주 · 성민정 · 안주희 · 김수지(2020).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2020).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행정안전부(2021a).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행정안전부(2021b).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